

석유제품에 대한 법적 검사 요구사항 개정안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배경:

본 개정안은 항공터빈유 및 차량용 무연 휘발유의 검사 표준으로 개정된 CNS 2558:2025 및 CNS 12614:2025를 채택하고자 한다. 또한, CNS 16221, "합성 탄화수소를 함유한 항공터빈유"를 항공터빈유에 대한 필수 검사 표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행 예정일: 2025년 5월 1일

대상 제품(HS/CCCN 코드) 및 해당 검사 표준:

품명	검사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참조 C.C.C. 코드 (첫 6자리는 HS코드와 동일)
	개정 후	개정 전		
항공터빈유 (Jet A와 Jet A-1에 한함)	기존 원료에서 파생되었거나 승인된 특정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연료: <u>CNS 2558:2025</u> 기존 성분과 합성성분이 혼합 구성된 연료: <u>CNS 16221:2023</u>	CNS 2558:2018	등록된 관리시스템을 갖춘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2710.19.11.00.3 2710.20.21.00.8
차량용 무연 휘발유 (92, 95, 98 RON만 해당, 알코올 휘발유 제외)	CNS 12614:2025	CNS 12614:2020		2710.12.10.00.1.C

비고:

- 표에 기재된 상품의 개정 후 검사 표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검사 표준은 전술한 날짜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CNS 16221 추가: 합성 탄화수소를 함유한 항공터빈유가 검사 대상 항공유에 대한 필수 검사 표준으로 추가되었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1. 모니터링 검사(무작위 검사 포함)

(1) 모니터링 검사 스기는 신뢰 구축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간소화된 배치별 검사 스기이다. 특정 상품의 여러 배치가 배치별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검사는 배치별 검증, 무작위 추출 배치 검사, 서류 검사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상품 도착 시 통관항의 검사기관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생산시설에서 출하되기 전에 제조 현장이 있는 지역의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3) 신청 시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등록된 관리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제품 모니터링 검사(관리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검사)

(1) 모니터링 검사 대상 상품의 생산시설은 BSMI가 인정한 기관에서 품질 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BSMI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BSMI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리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2) 등록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는 검토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QMS 인증서 및 기본 시험 장비 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토 후 준수가 확인되면 등록 코드가 부여된다.

(3) 신청자가 해외 사업장인 경우, 대만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현지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배치당 CIF 금액의 0.1%

등록된 관리시스템을 갖춘 시설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배치당 CIF 금액의 0.02%

관련 요구사항:

- 표에 기재된 상품의 검사 표준은 본 공고에 고시된 버전이어야 한다.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는 경우, BSMI는 추후 공고를 통해 업데이트된 버전의 시행일을 고시한다.
- 표에 기재된 C.C.C. 코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된다. 등재된 제품은 C.C.C. 코드가 재무부 관세청 또는 경제부 국제무역청에서 다르게 식별되더라도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